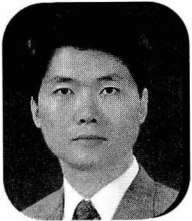


음주단속시 물로 입안을 헹굴 기회를 달라는 요구...

LAW Common Sense Information



글 _ 박종복 변호사

음주단속시 물로 입안을 헹굴 기회를 달라는 요구를 무시한채 호흡측정기로 측정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라면 그 수치를 믿을 수 없어서 무죄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

Q 맥주 1잔을 마신 직후 운전하다가 혈중 알코올 농도 0.05%로 적발되었다. 당시 입안에 술기운이 남아 있어서 단속 경찰관에게 물로 입을 헹구고 다시 측정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 구제받을 길은 없는가?

A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는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같은조 제4항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하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거나 운전면허처분이 정지될 것인지 아닌지는 운전 당시 귀하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 이상이나 아니냐에 달려 있다.

대법원은 최근 호흡측정기로 측정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05%로 나타난 사안에서 “호흡측정기에 의한 혈중 알코올 농도의 측정은 장에서 흡수되어 혈액중에 용해되어 있는 알코올이 폐를 통과하면서 증발되어 호흡공기로 배출되는 것을 측정하는 것이므로 최종 음주시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트림, 구토, 치아 보철, 구강청결제 사용등으로 입안에 남아 있는 알코올, 알코올 성분이 있는 구강내 타액, 상처부위의 혈액 등이 폐에서 배출된 호흡공기와 함께 측정될 경우에는 실제 혈중 알코올의 농도보다 수치가 높게 나타나는 수가 있어 피측정자가 물로 입안 헹구기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한 호흡측정기에 의한 혈중 알코올 농도의 측정결과만으로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반드시 그와 같다고 단정할 수 없거나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수치가 혈중 알코올 농도보다 높다는 의심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5 도 7034 판결, 공 2007. 1. 1.(265) 85)한 바 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도 이와 같은 점을 적극 주장한다면 무죄판결을 받는 등 법적인 구제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진다.